

<http://dx.doi.org/10.17703/JCCT.2016.2.3.23>

JCCT 2016-8-4

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Applicating and Introduc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서윤희*, 장영현**

Seo Yunhee*, Chang Younhyun**

요약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매스미디어 매체들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도 무한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에 기록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당하기도 한다. 개인의 신상 털기를 통한 마녀사냥은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점으로 증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및 적용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암호화 관리, 소유권 상속, 블라인드 처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어 :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정보보호, 암호화, 상속

Abstract As a large portal sites are beginning to replace the function of the mass media, new risks began to raise. It remained without being deleted that data written to the internet was a serious privacy problem occurs. The sensitive information was inferred based on the personal data recorded in the past and also anothe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tself. Witch-hunt through the personally identifiable rob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damage to the parties not be able to live a normal lif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tudy on the need for a 'right to be forgotten' to delete the personal information relating to on-line through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activation measures. At the same time, w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ncryption management, ownership inheritance, and blind treatment.

Key Words : Right to be Forgotten, Privacy, Data Protection, Encryption, Inheritance

1. 서론

정보화 기술이 발전되고, 보편화 되면서 산업과 자본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Naver나 Google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TV를 비롯하여, 신문,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 매체들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험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위험은 시간이 흘러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검색해 보면 정리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은 자신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

*준회원, 배화여자대학교 스마트IT학과

**정회원, 배화여자대학교 스마트IT학과

접수일자: 2016년 6월 17일, 수정완료일자: 2016년 6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7월 6일

Received: 17 June, 2016 / Revised: 26 June, 2016

Accepted: 6 July, 2016

**Corresponding Author: cyh@baewha.ac.kr

Dept. of Smart IT, Baewha Women's University, Korea

으면서 노출되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에 기록된 개인데이터를 찾아 정치적 성향, 과거의 행적 등을 들추어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 당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의 신상 털기를 통한 마녀사냥은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정도로 과도한 측면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적극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정의 및 문제와 해외의 사례 및 대응방안, 국내의 사례 및 대응방안, 국내에 잊혀질 권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제안한다.

II. 잊혀질 권리의 개념 정의

선행연구에서 와너(Warner)는 잊혀질 권리를 '기록의 보유에 관한 법적 규제'로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Conley는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개인에 관한 기록들은 실제적으로 디지털 정체성의 일부이며, 개인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핵심적 부분이며 개인에게 자신의 역사를 통제하고 그 역사 속에 숨을 수 있는 능력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프란츠 웨로 교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에 남겨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 권리'라고 언급했다. 존 핸들은 잊혀질 권리를 발전 과정에 있는 권리로 분류하고 '개인인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해 데이터 추적을 제거하고 구글 같은 회사에 자신의 검색 결과물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허락되는 권리'라고 해석했다.

유럽위원회는 잊혀질 권리를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에는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개인의 권리'라고 했다.

2011년 11월에 EU는 잊혀질 권리를 '개인인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의 용도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했다. SNS 에서 파일을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진이나 댓글 같은 개인적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는 'SNS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원하는 경우 파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요점으로 한다. SNS사업자가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보유 기간을 설정하고 외부 공개 차단 기능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회원 탈퇴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진 · 구본권은 과거의 신문 기사가 지속적으로 유통됨에 따른 피해에 주목했다. 이들은 잊혀질 권리를 '인터넷 이용으로 일부의 사람에 대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게 될 경우 더 이상 사회의 공공적이지 않은 사안의 기사에 언급된 관련자가 인터넷 검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현행 언론중재법에 과거 기사의 수정과 삭제를 명시하여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잊혀질 권리는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정보 소유권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1].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완벽한 사회적 기업을 규범화했고 망각을 예외로 만들어 버렸다. 디지털 시대 망각의 미덕을 주장하는 빅토어 마이어 쉰베르거는 디지털화, 저장의 저렴함, 손쉬운 검색, 글로벌 범위가 '삭제'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기사의 부활을 가져왔다. 인터넷 이전의 정보 유통은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다. 특정 정보에 대해 아는 사람만 아는 시대였고 언론의 기사는 미디어에 따라 고유한 유통기한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 기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보도된 기사의 유통과 유효기간을 거의 '무한대'로 만들었다.

개인정보 삭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이슈는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한다. 더 이상 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는 이용자가 없는 상황에서 죽은 자의 디지털 정보는 처리하기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디지털 기억의 지속은 사망자의 사생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영원히 보존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울 것인지, 삭제한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또한 우리가 만든 사이버 상의 또 다른 나를 생물체와 달리 불멸의 존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인간처럼 죽음을 맞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어떻게 기억 되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잊을 것인가도 중요해진 것이다[1].

III. 잊혀질 권리에 관한 문제

1. 영구 기록된 개인데이터의 문제점

인간은 망각을 통해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잊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새롭게 출발하여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서 인류는 '망각'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인터넷 검색, 특히 구글링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개인이 사망한 뒤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사적인 사진, 트위터에 남겨져 있는 사적인 이야기 등의 정보는 작성한 개인의 것이지만 그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게 있다. 그래서 개인이 맘대로 자신이 입력한 자료들을 삭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개인 정보들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잔존 데이터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나 처리의무자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 개인정보를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

이외같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나 통제권이 유명무실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2].

2. 잊혀질 권리의 결정권과 통제권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제작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혹은 처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또한 제3자가 특정 정보를 처분하는 경우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또 다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잊혀질"이 실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것도 생각 할 필요가 있다[3].

IV. 국내외 사례 및 대응

1. 유럽

EU 개인정보보호규정(안)의 제17조에 규정된 '잊혀질 권리'란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호규정(안)은 <표 1>과 같다.

표 1.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
 Table 1. Privacy Policy of the EU

1.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생성 단계부터 용도를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개인정보 분실·도난·훼손 발견 시 개인정보처리책임자는 규제 기관과 정보주체에게 24시간 내에 충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3.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완전한 삭제를 수행해야 한다
4.	정보주체가 다른 기업으로 개인정보 이동을 요청 시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기업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5.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 선택권과 형사처벌조항 등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잊혀질 권리'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확산 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용자, 즉 정보주체가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는 (1) 자기 자신이 게재한 자신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링크 및 복사 (3) 제3자가 게재한 글에 자기 정보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이다.

반면, '잊혀질 권리'에서 포털 서비스 사업자 등 개인 정보 처리자의 의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를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복사, 복제 또는 링크의 삭제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처리하고 취급하는 제3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기술적 조치

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3자가 공개를 허락할 시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책임은 삭제나 처리 정지등을 의미한다.

역으로 매스미디어 게시물에는 ‘잊혀질 권리’의 적용을 제한하는 등 상당히 폭넓은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와 공공 보건 부문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 역사·통계·과학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합법적이고 타 법률에 의해 개인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지 않는다[4].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의 한 사례로, 2009년 독일에서 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값을 모두 치른 후, 범죄 기록을 인터넷에서 지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 범죄자들은 ‘이미 죄값을 치른 이후에도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독일 법원은 범죄자들에게도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처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와같이 유럽은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

2. 미국

미국은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입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공개된 진실한 정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잊혀질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인 개방성의 특징에도 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사용자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 및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사망 이후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계정을 탈퇴해 주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대행해주는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과 같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6].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지금 다시 페이스북을 만든다면 친구에게만 허용하는 개인정보를 모두에게 공개로 기본 설계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다는 표현의 자유

를 좀 더 중시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미국은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국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5].

3. 한국

유럽의 ‘잊혀질 권리’ 도입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NS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를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SNS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5].

사용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정보가 포함된 관련 게시물을 찾아서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모두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3].

국내 포털들은 본인과 가족의 신청과 요청의 형식으로 사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하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할 계획이다. 다음은 사이트 탈퇴 시 블로그 등 항목을 선택해 본인의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SK커뮤니케이션즈는 사용자 및 망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삭제해 주고 있다[7].

V. 잊혀질 권리의 도입 방안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잊혀질 권리’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동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삭제 및 수정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를 수행하기 위해선 <표 2>의 과정이 필요하다[8]. <표 2>에 의하면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선 개인정보의 위치, 유통된 모든 복사본 정보에 대한 추적, 삭제 권한 여부 결정, 파생된 복사본까지 삭제 등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만족하기 위해선 기술적 부분이 실현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일반적 정보보호 기술인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이나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저절로 삭제되는 정보 만료

일 기술, DRM 기술 등이 사용 가능하다.

표 2. 잊혀질 권리 수행 과정
Table 2. 'Right to be Forgotten' perform process

1.	잊혀질 권리 요청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요청한 개인 정보 데이터의 저장되어 있는 모든 위치 파악
2.	데이터에서 파생된 모든 복사본 정보에 대한 추적
3.	데이터 삭제 요청에 대한 권한 여부 결정
4.	삭제 요청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와 파생된 복사본까지 삭제.

사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범위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멘틱 웹 기술을 활용한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구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멘틱 웹이나 연계데이터 웹 방식의 연구 가운데 프라이버시 혹은 '잊혀질 권리'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내용은 소위 정책 인식 웹 방식(Policy-Aware Web)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권현영 외 5인이 발표한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반영 방안 연구 보고서에 게재된 [그림 1]의 시멘틱 웹은 본인이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데이터세트에 설정한 개인정보 정책에 따라 설정된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 공유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3].

기존에 있는 방안 외에 제안하는 방안 첫째는, 하나의 아이디나 하나의 IP주소로 쓰여진 모든 글에 대해 특정한 암호 코드를 넣어서, 구글의 계정 관리 시스템처럼 관리 시스템으로 검색을 하면 내부에서 암호 코드를 찾아내 개인이 쓴 모든 글들을 찾아내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한 후, 가족들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넘겨주어, 그 가족들이 삭제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글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잊혀질 권리에 해당하는 삭제를 선택하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도록 하고, 구글링을 통해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보안문제 또는 기존 기술이 가진 한계점, 개인정보에 대한 시점관리 및 처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적 처리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해서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구현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ENISA(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존하는 데이터들의 검색 및 삭제 등에 관한 기술들을 살펴보았을 때 데이터가 접근권한 없이 복사되고 가공되어서 재유통되는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술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현실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관한 욕구가 커지다보니 온라인상의 본인의 흔적을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가 새롭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본래 기록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장애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 삭제가 되지 않으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3]. 온라인에서 정확성과 완전성, 최신성의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만큼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고 시일이 지난 정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삭제 또는 교정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VI. 결론

온라인 기록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록이 오랜 기간 동안 남겨질 뿐만 아니라, 기록의 유통 또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기존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형태의 위험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편의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반면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적인 개인정보까지 제한 없이 전파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던가, 개인정보를 수정 및 재생산하는데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 도입은 사회에 꼭 필요하다. 단, '잊혀질 권리'를 도입함에 있어 살펴되어야 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핵심 기

반인 정보의 속성이나 검색 엔진 등의 운영 측면에서 대
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개인정보
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외에 개인정보를 포함하
는 정보의 삭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잊
혀질 권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의 손이 거처진 망각이 과연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
요성이 있는지 헌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잊혀질 권리’ 수용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수시로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작성했
던 글과 댓글에 대해서 정리 및 삭제를 해야 한다. 앞으
로 이름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검색해서 개개인의 사적
인 정보는 필터링 되어 나오지 않게 하든지, 검색되는
정보를 전부 다 필터링 할 수 없다면 이용자가 간단한
절차에 걸쳐서 개인정보 및 본인이 쓴 글을 삭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차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사회적 필수
요소로 인정하려는 노력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References

- [1] Hong Myungshin, "Attempts at well-dying of in
formation – International trends surroun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Press Arbitration, Vol.31,
No.2, pp.20–31, 2011
- [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0711374597651&outlink=1>
- [3] Gwon Heonyoung, Jung Sangki, Lee Kyungku, Ki
m Gyeongyeol, Park Sejin, Kim Nayeon, "Resear
ch reports for domestic institutional reflection m
asure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2012
- [4] Ko Eunbyeol, Choi Gwanghi, Lee Jail, "The diffe
rences of 'Right to be Forgotten' for implementat
ion in the EU and South Korea – Comparative an
alysi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Joint Special Edition – Korea Institute of Infor
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Korea Soci
ety of Internet Ethics, pp.34–41, 2012
- [5] Kim Jintae, Shin Yongtae, Korea Society of Inte
rnet Ethics, Vol.01, No.01, pp.10–11, 2012
- [6] Bae Young, "Lifelog diffusion and Right to be Fo
rgotten",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Vol.
3, No.4, pp.86–99, 2012
- [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41502010531789002
- [8] ENISA, "The right to be forgotten – between e
xpectations and practice", 2012